【논문】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

이 명 순

【주제분류】 정치철학, 윤리학
【주요어】 정치적 권위, 정치적 의무, 정당화, 정당성,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공정성, 혜택의 수용, 단순한 수혜
【요약문】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자발성을 토대로 정당화하는 논변에는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이 있다. 동의 교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를 통해, 공정성 논변은 정치 공동체가 제공한 혜택의 상호 보답을 통해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몬스는 로크의 동의 교설은 묵시적 동의 개념을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그는 공정성 논변의 경우 단순한 수혜와 혜택의 수용에 대한 구별을 통해 자발성을 담보하는 후자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며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두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자발성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 및 인식 조건에 의해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를 구별하게 되면 혜택의 수용은 선택 행위가 되고, 나아가 관계적 선택 행위로서 묵시적 동의에 포섭된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변은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설득력을 상실하고 동의 교설에 포섭되는 것이다.

Ⅰ. 정치적 의무에 대한 예비적 고찰과 논의의 한정

정치적 의무[1]란 우리가 속한 특정한 정치 공동체를 지지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요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의무를 도덕적 의무 및 법적 의무와의 대조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도덕적 의무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면, 정치적 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의무는 특수주의적(particularistic)이다. 한편, 법적 의무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특수주의적이다. 그러나 법적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 권력에 의한 처벌이 수반되며, 대체로 이러한 강제 처벌이 의무 이행의 동기가 된다. 그러나 정치적 의무는 그러한 강제 처벌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행해야 할 도덕적 근거에 의해 이행된다. 따라서 정치적 의무는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법적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무는 공동체와 개인 간의 특수한 도덕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나 법적 의무와는 달리 정치적 의무가 특수주의적인 도덕적 요구로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시몬스(A. John Simmons)는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결사체(association) 논변으로, 정치적 의무가 특

1) 영어의 ‘duty’와 ‘obligation’은 모두 의무로 번역된다. ‘obligation’의 경우 ‘책무’라는 번역도 가능하나, ‘책무’가 일반적으로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가리킴으로써 다소 제한적임을 고려해 여기에서는 ‘의무’로 번역한다. 다만, 다음 단락에서 제시되는 ‘자연적 의무’만 ‘natural duty’의 번역어임을 밝혀 둔다. ‘duty’와 ‘obligation’을 구별하는 요긴한 방법은 전자는 자발성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자발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무’라는 표현은 한 정치 사회에 대한 복종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한 정체에 속한 시민들로서의 역할에 수반되는 도덕적 요구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거래(transaction) 논변으로 이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적 의무가 특정한 국가에 대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동의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 체계로서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상호 보답 논변 또는 공정성 논변이다. 셋째는 정치적 의무를 자연적인 의무로 파악하는 입장이다.[2]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은 비자발성을, 두 번째 입장은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참여자의 자발적 행위와 무관하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참여자의 자발적 행위가 정치적 의무의 발생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세 유형의 정당화에서 필자가 주요 관심을 갖는 것은 자발성을 토대로 하는 거래 논변이므로 필자는 논의를 거래 논변에 한정한다.

시몬스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로서 거래 논변이 도덕적 요구로서의 정치적 의무는 정당화하지만, 현실 정치권력의 정당성까지는 보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정당화(justification)와 정당성(legitimacy)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의해 또는 국가의 도덕성에 의해 무정부 상태보다 선호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정당한지는 거래 논변이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동의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의 수용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현실 국가는 정당한 정치적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 요약하자면, 거래 논변은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할 수는 있

---

2) A. John Simmons,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9-62쪽. 시몬스는 이미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the Justification of Conscription" (1983),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5쪽에서 유사한 분류를 제시하고 소개한다.

3) 정당화와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A. John Simmons의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1989),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자발성을 근거로 할 경우 철학적 무정부주의로 이르게 된다는 주장은 그의 *On the Edge of Anarchy: Locke, Consent, and the Limits of Society* (Princeton: Princeton

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력에서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논의의 테두리를 다시 한 번 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정당화와 정당성에 대한 시몬스의 구별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이론적 정당화와 현실적 적용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거래 논변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손 치더라도 현실의 정치적 권위가 그런 정당화에 따라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스의 그러한 구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필자는 시몬스의 거래 논변에 대한 분석은 심각한 난관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두 논변에 대한 그의 분석은 그가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에, 미리 언급하자면, 공정성 논변을 동의 교설에 포섭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두 논변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적 근거로 인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필자는 시몬스의 분석을 따를 경우 그러한 구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로크의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 이 두 입장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을 각각 제시하고, 셋째, 그의 분석이 지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시몬스가 공정성 논변을 동의 교설의 한 부분으로, 즉 묵시적 동의 교설로 환원시키고 있음을 보이겠다.

Ⅱ. 로크의 묵시적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

1. 로크의 묵시적 동의 교설

일반적으로 계약론은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유망한 입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계약론은 통상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에 의거해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한다. 이의

University Press, 1993), 248-269쪽 참조.

전형적인 입장이 자연권에 기초한 로크의 동의 교설이다. 그는 정치 사회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시작되고, 이로부터 시민들은 함께 동의한 다른 사람들과 정치 사회에 대해 그들의 집합적 의사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4)]

>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치체(body politick)를 결성하여 하나의 정부하에 있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곧 그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고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의 사회를 결성한 원초적 계약은 무의미하며 협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5)]

이 간결한 논변이 직관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이유는 강제로서의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근거를 개인들의 평등과 자유에 의거한 자율성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물론 이 논변은 다수결에 관한 문제—다수결에 패배한 소수가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차치하겠다. 그럼에도 이 논변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실제로 동의했는가라

---

4)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Peter Laslett 편집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dent edition, 1988), 95절, 330-331쪽. 번역은 강정인・문지영 역의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1996을 따랐다.

5) John Locke (1988), 97절, 332쪽.

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성립된 국가에 그저 태어났을 뿐 동의와 같은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 개념은 정치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정당화하기는 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다.

로크는 이 문제를 국가 발생에 관한 자신의 설명에 대해 가능한 반론들 중 하나로 인식했다. 그 반론은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특정한 국가에 종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6] 달리 말하면, 로크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를 설립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에 대한 대응으로, 로크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구별한다.[7] 명시적 동의는 선언, 약속, 끄덕임과 같이 동의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8] 한편, 묵시적 동의는 그러한 명시적 표현을 결여하고 있지만 동의로 간주되는 일정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시몬스가 제시하듯이, 묵시적 동의는 다른 종류의 행위들을 통해 주어진다.[9] 쉬운 예가 침묵이다. 로크에게서는 이런 침묵이 다양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열거하는 다른 종류의 행위는, 한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를 상속, 구매 또는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것이다.[10] 따라서 한 사람이 상속이나 구매, 증여 등 어떤 수단을 통하든 이미 특정 국가의 보호 하에 있는 한 뙈기의 땅이

---

6) John Locke (1988), 100절, 333-334쪽.

7) John Locke (1988), 119절, 347-348쪽.

8) 러셀(Paul Russell)은 말하기, 쓰기 이외에 끄덕이기와 같은 푸펜도르프(Pufendorf)의 예들을 인용하면서도, 로크의 명시적 동의를 언어적 동의로 해석한다. 그는 여기에서 명시적 동의의 주체와 상황에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 "Locke on Express and Tacit Consent: Misinterpretations and Inconsistencies," *Political Theory*, 14권 (1986. 5.), 292-295쪽 참조. 그러나 우리는 명시적 동의가 그리 불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준법의 의무를 선서(말)나 서명(글)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귀화 외국인의 경우도 국적 증명서 제출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다.

9) A. John Simmons, ""Denisons" and "Aliens": Locke's Problem of Political Consent" (1988),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2001), 166쪽.

10) John Locke (1988), 119-120절, 347-348쪽.

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 그는 그러한 양도에 의해 이미 그 땅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종속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로크는 외국 여행자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시키는데, 외국을 여행하는 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고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당사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반대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의 일정한 행위가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묵시적 동의 개념의 도입이 지니는 분명한 장점은 국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현실에서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11] 즉, 한 국가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답변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에 태어나 거주자가 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법적 보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누린다는 사실로부터 그 국가를 지지하고 법률을 준수할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로크는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12]이고, "그러므로 자연법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입법자들을 포함하여 만인에게 영구적인 규칙으로 남아 있다. …… 자연법의 근본적인 요소는 인류의 보존이므로 어떠한 인간적 규칙도 그것에 반해서는 정당하거나 유효할 수 없다."[13]라고 전제한다. 이로써 그는 이미 그러한 국가는 자연법적

---

11) 주석 8)에서 든 예들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생 시의 출생신고를 통해 명시적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부모나 후견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명시적 동의를 한다는 주장은 위의 문제에 대한 논박이 될 수 없다.

12) John Locke (1988), 134절, 355-356쪽.

13) John Locke (1988), 135절, 358쪽.

구속을 받는 도덕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서로 인해 로크에게서 동의 자체가 정치적 의무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이는 개인들이 동의하는 국가가 도덕 국가인 경우에만 자발적 동의의 자기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서 조건은 전제적인 국가에 태어난 한 개인이 그 국가를 지지하거나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무력화시킨다. 이에 따라 한 국가에 태어난 사람이 그 국가에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로크의 묵시적 동의 개념을 가설적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나 핏킨(Hannah Pitkin)은 개인들이 비도덕적인 국가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로크의 주장을 고려하여,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가설적 동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로크의 묵시적 동의가 현실적 동의로 간주될 경우, 전제정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도덕적 국가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난점에서 로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저 태어난 사람들이 해당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묵시적 동의는 국가의 도덕성에 좌우되며, 결국 그 동의는 최초의 건국자들의 합리적 동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14] 정치 사회의 법이 자연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로크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한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계약이 현재의 사람들이 동의했었을 계약이라는 핏킨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가설적 동의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몬스가 지적하듯이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현실적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개별 시민들의 현실적 동의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많은 구절들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15] 물론 이런 비판은 로크의 동의 교설을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 차원이

---

14) Hannah Pitkin, “Obligation and Consent I,”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9권 (1965. 12월), 994-997쪽과 “Obligation and Consent II,”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권 (1966. 3월), 39쪽.

15) 시몬스는 로크의 구절들에서 ‘개인의 동의’ (96, 106절), ‘그 자신의 동의’ (15, 95, 119, 138, 139, 189절) 등을 전거로 제시하고 있다. A. John Simmons (1993), 206-207쪽 참조.

아니라 정당성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정당화 차원에서라면 가설적 동의도 정치적 권위를 근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개인과 국가 간에 현실적으로 특수한 도덕적 관계가 정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은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 수준이 아니라 정당화의 현실적 수용, 즉,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수준의 문제이고, 로크는 이에 대해 개인의 현실적 동의를 통해서만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로크가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측면에서 현실적 동의를 강조한다고 하여 정당화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화 수준은 이론적 차원으로, 정당성 수준은 현실의 실천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권위가 동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이론이 정당화되었다면, 이를 비판적 준거로 삼아 현실에서의 정치적 권위가 정당성을 띠고 있는지를 비판할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 정당화 수준에서 가설적 동의가 유의미한 이유이다. 그래서 "적절한 유일한 "동의"는 가설적이고, 초시간적이며 추상적인 합리적 인간들이 하는 가설적 동의이다"[16]라는 한나 핏킨의 주장이 유의미하다면, 이것은 정당화 수준에서 그런 것이다.

필자는 한나 핏킨과는 달리 로크의 동의를 가설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람들이 실제로 한 국가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국가가 전제정인 경우 이에 대한 그들의 저항권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입장에 따라 국가 권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과거의 묵시적 동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크가 국가의 도덕성을 전제함으로써 동의의 한계를 설정하듯이, 국가의 도덕성 결여는 동의의 철회 조건이 된다. 둘째, 로크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토지 소유를 비롯한 여타의 소유에 대한 향유와 기타 법적인 보호가 묵시적 동의를 구성한다고 할 때, 이는 현존 국가에 대한 현재의 실제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의 최초

16) Hannah Pitkin (1965), 997쪽.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적인 가설적 동의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속을 통해 아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소유와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일 뿐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누구나 스스로 맺은 협정이나 약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협정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이나 후손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17] 이와 같이 로크는 아버지나 조상이 동의한 바에 대해 자식이나 후손이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설적 동의는 정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울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한다. 이 점은 현실적 동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많은 예들에서 잘 드러난다.[18] 이러한 이유들로부터 필자는 로크가 동의를 정치적 권위의 이론적 정당화를 넘어 정당성 차원에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공정성 논변

거래 논변의 두 번째 형태는 상호 보답을 근거로 한다. 상호 보답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특수한 도덕적 거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한 논변들은 하트(H. L. A. Hart)의 상호 규제와 롤즈(John Rawls)의 공정성 원칙을 토대로 삼고 있으며 공정성 논변으로 불린다. 이 입장의 가장 독특한 점은 **동의나 약속 없이도** 협력 체계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즉, 수혜는 상호 되갚음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한다.

---

17) John Locke (1988), 116절, 346쪽.

18) 씬시아 스타크(Cynthia A. Stark)는 도덕 원칙들의 정당화에서는 가설적 동의의 구속력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에서의 구속력은 거부한다. "Hypothetical Consent and Justific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97권 (2000. 6.) 참조. 데니얼 브루드니(Daniel Brudney)는 다양한 예를 통해 도덕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가설적 동의의 구속력을 거부한다. "Hypothetical Consent and Moral Force," *Law and Philosophy*, 10권 (1990) 참조.

>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권리들과 의무들의 세 번째 중요한 원천은 규제의 상호성이라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규제의 상호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철학자들이 그것을 동일시했던, 권리를 창출하는 다른 거래들(**동의, 약속**)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경우에만 정치적 의무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어떤 공동의 기획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규제할 때, 필요 시 이런 규제에 복종해 온 사람들은 그들의 복종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규칙들은 공직자들에게 복종을 강제 집행할 권위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그 규칙들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는 사회의 협력적 구성원들에게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들은 복종을 요구할 상관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19] (필자 강조)

하트에 따르면 규제의 상호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권리의 제약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상호 혜택을 산출한 공동의 체계를 협력적으로 지지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도덕적으로 부과된다. 다시 말해 혜택은 공짜가 아니라 잠재적 부채인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의 수용에 의해 창출된 관계는 이 관계에 돌입하는 참여자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하트는 '공정한'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받은 혜택에 대한 상호 보답이 도덕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상호 규제 논변은 공정성 논변으로 간주된다.

이 생각은 롤즈에 의해 공정성 원칙이라는 보다 세밀한 형태로 제시된다.

> 공정한 경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 협동 체제가 존재하며 그 체제가 산출하는 이득은 모든 사람이 혹은 거의 모든 사람이 협동할 경우에만 생겨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아가 협동은 각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며 혹은 적어도 자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자. 끝으로 협동에서 생기는 이득은 어느 한도까지는

---

19) H. L. 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Philosophical Review*, 64권 (1955. 4.), 185쪽.

> 무임 편승이 가능하다고, 즉 협동 체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알 경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도 그 체제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안정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조건 아래서 그 체제의 이득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협동하지 않고서 이득에 동참해서는 안 될 공정한 경기의 의무에 구속된다. 이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득이란 모든 이의 노력의 결과로서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며,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기 이전에는 그것은 공정성에 의해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20]

롤즈의 공정성 원칙은 하트의 상호 규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것은 이들이 정치 공동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공유하는 조건들로부터 드러난다. 첫째, 정치 공동체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상호 혜택의 협력 체계라는 점이다. 둘째는 상호 혜택의 산출은 부분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며, 이런 희생에 의해 혜택을 받아 온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협력 체계를 위한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롤즈의 논변에서 특징적인 점은 그가 협력 체계의 정의를 조건으로 명시한다는 점이다. 즉 협력 체계가 정의롭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치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의 공정성 논변에서 정의 조건은 "의무의 본질적인 조건"[21]이므

---

20) John Rawls,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1964),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편집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22쪽. 번역은 「법적 의무와 공정한 경기의 의무」, 황경식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역, 서광사, 1988을 따랐다. 롤즈는 1964년의 이 논문에서와는 달리 『정의론』에서는 정치적 의무가 정의의 의무(duty of justice)로부터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론』에서 의무의 원칙들을 자연적 의무의 원칙과 공정성 원칙으로 나누고, "일반 시민들은 정의의 의무에 구속되며, 유리한 직책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나 자신의 이득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공정성의 원칙들에 의해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1999), 308쪽 참고. 번역은 『정의론』, 황경식 역, 이학사, 2003을 따랐다.

21) John Rawls (1964), 123쪽. "의무의 본질적 조건"인 롤즈의 정의 조건은 정의의 두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들은 「법적 의무와 공정한 경기의 의

로 대단히 중요하다. 일정한 도덕적 입장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이 협력 체계의 목적을 규제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탄압, 권리와 의무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부도덕한 목적은 엄격하게 금지된다.[22] 이러한 정의 조건은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로크의 국가의 도덕성과 유사하게 이해된다.

따라서 공정성 원칙은 정의의 조건 하에서 협력 체계의 참여자들이 그 혜택을 수용해 왔다면 그 체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PA 체계라는 반례를 구상한다. PA 체계에서는 모두가 일 년에 하루를 희생하여 대중오락 방송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노직에 따르면 타인들의 희생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 이런 혜택이 자신이 하루를 희생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중을 즐겁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23] 이런 반례로부터 공정성 개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몫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얻게 되는 혜택에 비례하는 부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몬스는 이런 반론을 원용함과 동시에 공정한 몫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공정성 논변에 부가한다.[24] 공정

무」에도 정식화되어 있지만, 본 논문의 한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정의론』에서의 정식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의 공정한 균등을 포함하는데, 이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John Rawls (1999), 105쪽.

22)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1958),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편집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59쪽.

23)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93-94쪽. 번역본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참조.

24) A. John Simmons, "The Principle of Fair Play" (1979),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2001), 7-9쪽과 21-23쪽.

성 원칙에 우호적인 아너슨(Richard J. Arneson) 또한 혜택이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부담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정성 원칙을 수정한다.[25] 국방이나 경찰 치안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평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정은 합당하다. 혜택의 불평등은 수혜에 비례하는 부담을 공정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원칙이 공정한 몫에 관련된 난점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수정되었다 할지라도, PA 체계를 통한 노직의 예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한 사람이 그 체계에서 받는 혜택이 그가 치러야 할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가 그 체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체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의무가 지워질 수 있는가?[26] 노직이 지적하는 요점은 분명하다. 자발적 동의를 결여한 단순한 수혜는 그 수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몬스는 거짓 반대자의 예를 통해 동의만으로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거짓 반대자 예는 다음과 같다. 노직의 PA 체계에서 사람들이 물 공급의 문제를 공동 우물을 파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존스는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우물이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밤에 몰래 우물의 물을 깃는다. 즉, 그는 공동 체계의 혜택을 몰래 수용한 것이고, 그래서 전형적인 무임승차자가 된다. 이런 반례에 따라 시몬스는 동의뿐만 아니라 혜택의 수용도 사람들이 협력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부담의 공정한 몫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노

---

25) Richard Arnes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s,” *Ethics*, 92권 (1982. 7.), 673쪽.

26) 노직은 수정된 공정성 논변에 반대하는 또 다른 예를 든다. A가 B에게 책을 던지고는 B에게 책값을 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직의 결론은 한 체계로부터의 혜택의 수용이 아니라 그 체계에 대한 동의가 사람들이 협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Robert Nozick (1974), 95쪽 참조.

직의 반론을 거부한다.[27] 시몬스의 주장은 동의 이외에도, 그리고 동의와 구별되는 혜택의 수용 행위도 그 수혜자에게 공동체에 기여해야 할 도덕적 요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 논변에 따르면, 정치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수용해 온 사람이라면 그 정치 공동체를 지지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를 상호 보답으로 떠안게 된다.

Ⅲ. 묵시적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

1. 묵시적 동의 교설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 약한 해석과 강한 해석

개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 정치적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동의 교설에서 주요 관심을 끄는 것은 묵시적 동의이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명시적 동의자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묵시적 동의 개념이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의 묵시적 동의 개념에는 구성원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다.

>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28]

>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평온하게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수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29]

> 그러한 향유로 인해 그가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그 향유와

27) A. John Simmons (1979), 16-17쪽.
28) John Locke (1988), 119절, 347쪽.
29) John Locke (1988), 122절, 349쪽.

더불어 시작하고 종료된다.[30)]

즉, 그에 따르면, 명시적 동의자는 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반면, 묵시적 동의자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 게다가 명시적 동의에 의해 완전한 구성원이 된 사람은 그 자격을 영구히 보유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의무에도 영구히 구속되는 반면, 묵시적 동의자는 한 사회가 제공하는 이익들의 향유가 끝남과 동시에 정치적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다시 말해, 묵시적 동의자의 정치적 의무는 일시적이다. 따라서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에 대한 로크의 이런 구별이 지니는 난점은 분명하다. 그는 태생적인 주민을 묵시적 동의자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전한 시민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묵시적 동의자는 외국인 여행객의 지위로 전락되는가?

이러한 외견상의 문제에 대해 시몬스는 1988년의 논문 ""Denisons" and "Aliens": Locke's Problem of Political Consent"에서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자비롭게 해석한다. 그는 정치 사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로크의 이론에서 국가의 목적이 평화롭고 생존 가능한 사회이며 이런 사회를 위해 정치적 동의는 일종의 내장된 내용(default content)을 지닌 채 주어진다고 해석한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이루어지는 한에서, 그것들은 정치 사회의 목적에 본질적인 포괄적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31)] 일단 이런 해석은 정치적 의무라는 개념에 합당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정치 사회에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개별적인 의무 하나하나에 별개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고, 그 정치 사회를 지지하고 복종할 도덕적 요구가 수반됨을 의미

---

30) John Locke (1988), 121절, 349쪽.

31) A. John Simmons (1988), 167-168쪽. 시몬스가 이 논문에서 전개한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을 편의상 후기 해석 또는 약한 해석이라 부르겠다. 그의 1976년 논문 "Tacit Consent and Political Oblig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5권 (1976. 봄)에서는 로크의 묵시적 동의를 혼동된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이를 편의상 전기 해석 또는 강한 해석이라 부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묵시적 동의뿐 아니라 명시적 동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다. 즉, 정치 사회에 대한 동의는 포괄적 수준에서의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해석에 따르면, 동의의 목적과 내용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묵시적 동의자들을 주어진 정치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해석은 태생적 거주자의 지위에 있어서 외국인 여행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다. 첫째, 묵시적 동의자들은 일시적 방문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태생적 거주자는 자신들의 정치 사회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내포하는 묵시적 동의를 하는 반면, 후자는 그런 정치적 목적 없이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비정치적 동의를 할 뿐이기 때문이다. 각 동의가 정치적인지의 그 성격 여부가 정치 사회의 구성원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둘째, 묵시적 동의자들은 명시적 동의자들과 동일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로크의 구별에 따를 경우, 이 두 유형의 동의자들은 동의의 지속성과 충성 등에서 차이를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구성원 자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서 어떠한 실질적 차이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시몬스의 후기 해석은 로크의 동의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정치적 의무의 조건이 되게 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시몬스의 이러한 자비로운 해석은 묵시적 동의에 대한 약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해석에서 시몬스는 동의에 대한 로크의 예들을 약한 의미에서의 *선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는 로크의 묵시적 동의 행위들은 '분명하고 자유로운 선택 상황에 대한 선택을 지시하는 반응'으로서 '선택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32] 따라서 시몬스의 자비로운 해석인 후기 입장에 따르면 묵시적 동의자들도 정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진다고 말할 수 있다.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시몬스의 후기 약한 해석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묵시적 동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한 회사는 M&A와 같은 결정에서 그 회사의 모든 주

32) A. John Simmons (1988), 166쪽.

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주들에게 응답지를 보내 M&A에 반대할 경우 반대를 명시하고 서명을 하여 응답지를 재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주주들이 침묵하거나 응답지를 발송하지 않는 것은 M&A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명시적 반대의 결여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된다. 이 예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묵시적 동의가 자유로운 선택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점이다.[33] 즉, 어떤 당사자의 행위가 동의로 간주되려면, 그의 행위는 선택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크의 예들은 '분명하고 자유로운 선택 상황'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택을 지시하는 반응'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시몬스는 동의가 충족시켜야 하는 이러한 선택 상황을 강조하여 1976년의 초기 논문 "Tacit Consent and Political Obligation"에서는 로크가 묵시적 동의와 동의를 함축하는 행위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몬스는 동의를 함축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1) 행위자에게 동의를 요구했다면 그가 동의했었을 행위, (2) 행위자가 무언가를 수행할 것을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이성적이게 되는 행위, (3) 특정 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이 행위자가 마치 동의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하도록 도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제시한다.[34] 이 중 유형 (1)과 (2)는 조건적으로 표현된다는 점[35]에서 가설적 동의로 불릴 수 있다. 한편 유형 (3)은 앞에서 설명한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에 대한 공정성 논변에 사용되는 혜택의 수용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시몬스는 이런 구별을 토대로 로크가 열거하

---

33) 이것은 시몬스가 제시한, 회의 일정 조정과 대단히 유사하다. A. John Simmons (1976), 278-279쪽 참조. 그는 분명히 그러한 동의는 선택 상황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A. John Simmons (1979), 17쪽과 A. John Simmons (1998), 16쪽 참고.

34) A. John Simmons (1976), 286-287쪽.

35) 유형 (1)과 (2)가 이상화된 상황에서의 행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두 유형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행위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무언가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았었더라면, 그는 동의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유형을 가설적 "동의"라 부를 수 있다.

는,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동의를 함축하는 세 번째 유형의 행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로크는 묵시적 동의 개념에 혼동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36] 왜냐하면 실제로 로크는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는 행위의 대표적 예로 한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의 일부를 즐기는 것이라 제시하는데, 태생적 거주민의 경우 그들의 이러한 향유는 선택과 무관한 것으로서 유형 (3)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37] 따라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로크의 예들이 일정한 수혜(受惠)로 간주된다면 로크는 정치적 의무와 관련해서 공정성 논변을 펼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38]

시몬스가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초기 해석에서 후기의 자비로운 해석과는 다른 결론을 제시했던 이유는 한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의 일부를 향유하는 예들이 자유로운 선택 상황, 특히 당사자의 의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39] 사실 이러한 선택 상황의 결여는 로크의 동의 이론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그의 후기 해석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태생적 거주자가 명시적 동의

---

36) A. John Simmons (1976), 287-288쪽.

37) 유형 (1)과 (2)는 가설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38) 존 베넷은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정성 논변을 묵시적 동의의 토대로 삼는 넓은 해석을 거부한다. John G. Bennett, "A Note on Locke's Theory of Tacit Consent," *Philosophical Review*, 88권 (1979. 4.), 232-233쪽 참조. 그러나 시몬스는 로크가 제시한 묵시적 동의의 예들인 각종 향유는 진정한 동의 행위가 아니라 혜택의 향유로서, 정치적 의무를 이에 호소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사실상 공정성이나 감사에 호소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A. John Simmons (1976), 288쪽.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시몬스는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를 구별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로크의 각종 혜택의 향유에 대해 혜택의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에 대한 그의 구별을 따를 경우, 혜택의 향유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스는 공정성 논변을 분석하면서 이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의 구별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이후에 보겠지만, 이러한 구별이 공정성 논변을 동의 교설로 포섭되게 만든다.

39) 시몬스는 "물론 대단히 중요한 점으로, 구속력 있는 동의가 무의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로크의 의견은 분명히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A. John Simmons (1976), 282쪽.

자나 외국 방문객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다루면서, 그는 "[한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과는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를 갖는다"[40]고 말한다. 명시적 동의자로서의 주민들이나 일시적 방문객들은 모두 자신들의 국가가 있다. 그러나 한 국가에 그저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 이외의 다른 정치 공동체를 갖지 못한다. 국가와 같은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권리 보호와 평화로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무정부주의자들은 이를 부인하지만—태생적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동의가 선택 상황에서 수행되는 행위라는 시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묵시적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경우 시몬스의 후기의 약한 해석은 로크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해석일 뿐이고, 그의 초기 해석, 즉 로크가 묵시적 동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2.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 단순한 수혜와 혜택의 수용 구별

시몬스가 동의 이외에도 혜택의 수용이 정치적 의무를 근거 짓는다고 주장하면서 노직에 대해 제기한 반론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한다. 경제학에서 무임승차자는 "재화의 혜택을 받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사람"[41]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무임승차자가 시장의 참여자임을 전제한다. 즉, 무임승차자의 개념은 협력 체계의 구성원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묵시적 동의의 경우와 같이 혜택의 수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체계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시몬스는 공정성 논변에서 구성원 자

40) A. John Simmons (1998), 174쪽.

41) N. Gregory Mankiew, *Principles of Economics*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Second Edition, 2001), p. 228.

격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혜택의 수용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시몬스는 구성원 자격과 관련해 “한 개인이 협력 체계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그 체계의 규칙들에 대한 지지를 선서 또는 그에 지배될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2) 그 체계가 정립된 이후 그 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거나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42] (1)은 동의의 경우이고, (2)는 공정성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시몬스는 (2)의 경우에서 단순한 수혜(mere receipt of benefits)와 혜택의 적극적 수용(positive acceptance of benefits)을 구별한다. 여기에서 구별 기준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의도 및 인식이다. 시몬스에 따르면, 단순한 수혜는 한 체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의도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얻는 것이다. 즉 혜택이 단지 수혜자에게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혜자는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혜택을 얻고자 추구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체계의 수혜자가 된다. 반대로 혜택의 적극적 수용은 “한 개인이 (1) 그 혜택을 얻으려 애써 왔거나 (그리고 성공적으로 얻었거나) 또는 (2) 그 혜택을 의도적으로 알고서 취했음”을 의미한다.[43] 따라서 이런 구별에 따르면, 혜택의 자발적 수용은 인식 조건과 의도 조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44] 이러한 의도 및 인식 조건은 개별자가 일정한 혜택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지 않았거나 혜택 전반에 부과되는 도덕적 요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은 노직이 제시하는 PA 체계나 책 던지기와 같은 반례에 대

42) A. John Simmons (1979), 14쪽.

43) A. John Simmons (1979), 18쪽.

44) 시몬스는 혜택의 수용 개념에 강한 인식 조건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어떤 체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체계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A. John Simmons (1979), 20쪽과 24-25쪽. 게다가 그는 인식 조건이 협력 체계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아너슨, 클로스코(Klosko), 대거(Dagger) 등에 반대한다. A. John Simmons, “Fair Play and Political Obligation: Twenty years Later,”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40쪽.

한 적절한 대응책이 된다. 이와 더불어, 한 개인은 자신의 의도 및 인식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그저 획득하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은 당사자가 그 체계의 적극적 참여자인지에 의해 결정되고, 적극적 참여 여부는 의도 및 인식 조건 하에서 혜택을 수용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시몬스는 이러한 혜택의 수용 개념이 적용되는 혜택의 종류를 문제 삼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 논변의 지지자들은 이런 혜택을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에 적용한다.[45]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개별 시민의 생존에 필요한 중차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재가 주목받는 것이다. 그런데 시몬스는 "개방된" 혜택(open benefits)과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readily available benefits)을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개방된 혜택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회피할 수 없는" 혜택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공공재 일반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아무런 노력 없이도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인 것이다. 반면,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은 불편 없이 회피할 수 있는 혜택으로서 이 혜택을 얻으려면 일정한 노력이 따른다. 예를 들어 경찰에 특별 보호를 요청하여 그 혜택을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는 단순한 수혜의 대상이고 후자는 혜택의 적극적 수용의 대상이 된다.[46] 따라서 개방된 혜택은 수혜자의 의도 및 인식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반면,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은 의도 및 인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집합적으로 산출되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수혜자의 의도 및 인식과는 무관한 개방된 혜택에 해당한다. 자력구제를 선택하여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혜택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

45)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리처드 아너슨이나 조지 클로스코가 있다. 클로스코의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Ethics*, 97권 (1987. 1.)이나 "Presumptive Benefit,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6권 (1987, 여름) 등 참조할 것.

46) A, John Simmons (1979), 18-20쪽.

에 따라 시몬스는 현대의 정치 사회에서 실제로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온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47] 그는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혜택의 수용만이 그 당사자를 협력 체계의 참여자, 곧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므로, 혜택의 수용 개념에 의존하는 공정성 논변은 국가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보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몬스의 이런 구별은 구성원 자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공공재의 혜택을 요청한 개인들만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 공동체가 제공한 공공재의 혜택을 받아오면서 특별한 요청의 경우를 통해 구성원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구성원 자격 요건으로서는 너무 강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이민을 통해 귀화하는 경우나 난민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요청의 필요는 과도한 조건이라 해석된다. 또한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은 개방된 혜택을 전제한다는 점 역시 그의 구별을 무력화시킨다. 타인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찰에 특별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개방된 혜택으로서의 치안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공동체에서 그러한 특별 보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그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개방된 혜택의 수혜자들만이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의 잠재적 수혜자들인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쉽게

---

47) A. John Simmons (1979), 24-25쪽. 그는 현대 정치 사회에서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정치 사회에서 진정한 구성원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 그의 논변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게다가 그의 논변은 그가 철학적 무정부주의로 나아가게 만든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참여나 협력에 대한 의식을 결여함과 함께 선택의 여지없이 그 국가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에 그 국가는 정당한(legitimate)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Philosophical Anarchism," (1996),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반면, 클로스코는 공공재 산출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의식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George Klosko (1987) 참조.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인식과는 무관하게 개방된 혜택을 수용해 온 것이다.

Ⅳ. 시몬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

우리는 로크의 동의 개념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이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측면에서 동의 교설에 대한 상당히 유력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성 논변이 의존하는 혜택의 수용 개념에 대한 그의 분석도 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의 현실적 정당성 측면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음을 살펴봤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세밀한 분석이 심각한 난점에 처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공정성 논변에 있어서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의 구별이 제기하는 난점을 지적하겠다. 이 난점이란, 그러한 구별을 가능케 했던 의도 및 인식이라는 강한 조건이 공정성 논변을 동의 교설에 포섭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공정성 논변의 힘을 박탈한다는 것이다.[48)]

이를 위해, 먼저 선택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해 보자. 우리가 일정한 행위를 선택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의도와 인식을 갖고 그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선택 행위는 자발적이다. 그러므로 강제된 선택은 배제된다. 즉, 어떤 심리적 및 물리적 위협으로 인한 선택은 강제적 선택으로 배제된다. 예를 들

48) 공정성 논변의 가장 큰 특징이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공정성 논변의 지지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정성 논변의 지지자들은 앞에서 소개한 하트와 롤즈의 공정성 논변을 모태로 삼는다. 롤즈는 실제로 『정의론』에서도 공정성 원칙을 설명하면서 "책무(obligation)가 다른 도덕적인 요구 사항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책무란 우리의 자발적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약속이나 합의와 같이 공공연하거나 혹은 암묵적인 협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익(benefits)을 받아들이는 경우에서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고 명시한다. John Rawls (1999), 99쪽 (필자 강조).

어, 칼을 든 강도가 나에게서 돈을 내 놓으라 해서 내가 돈을 내놓는 경우, 이것은 강제적 선택 행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반자발적 선택이다. 한편 나의 의도 및 의식과는 무관하게 타인의 선택을 따르는 경우 이것은 비자발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나 후견인의 선택에 따라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역시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49] 이러한 구별에 따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 적절한 것은 자발적 선택으로 한정할 수 있다.

필자는 자발적 선택 행위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고자 한다.

> (선택 행위) 만일 행위자 A가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행위 X가 노리는 결과를 의도하고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조건과 결과를 인식하여 그 행위를 수행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는 행위 X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는 행위 X는 자발적 선택 행위이다).

이 형식화는 선택 행위가 자발적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한다. 첫째, 선택 행위는 자유롭게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택 행위는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선택 행위는 그 행위에 딸린 적절한 조건과 결과를 인식한 채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언급할 것은 세 번째 인식 조건이 행위 X에 딸린 제반 조건과 결과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행위가 수행되는 모든 조건과 그 수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 조건은 다소 약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행위에 대한 규정에 의해 동의는 자발적 선택 행위의 한 부류로 규정된다.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 행위가 한 개인에게만 관계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

---

49) 자발성, 반자발성, 비자발성에 대한 구별은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안락사 구별에서 원용한 것이다.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철학과 현실사, 1993, 212-217쪽 참조.

념이지만, 동의는 둘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 (동의) 만일 행위자 A가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다른 행위자 B에 대해 행위 X의 결과를 의도하고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조건과 결과를 인식하여 그 행위를 수행하겠다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는 행위 X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50]

동의에 대한 이런 규정은 묵시적 동의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묵시적 동의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침묵이나 무위를 통해 찬성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동의에 대한 이런 규정을 따른다면, 우리는 혜택의 수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시몬스는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의도 및 인식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혜택의 수용 개념이 만족시켜야 하는 이 두 조건은 자발적 선택 행위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는 혜택의 수용에 있어서 행위자의 자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자유는 자발적인 혜택의 수용 개념에서 이미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자유가 없다면 행위자가 혜택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택의 수용은 선택 행위에 포섭된다. 한편 혜택의 수용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자와 혜택을 입는 다른 행위자 사이에서 성립되는 관계적 행위이다. 따라서 혜택의 수용은 관계적 행위로서 동의 행위에 포섭된다.

이를 시몬스가 혜택의 수용을 예시할 때 사용한 경찰의 특별 보호

---

50) 시몬스가 동의를 필자의 형식화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내가 동의에 대해 말할 때에 나는 동의자가 자신이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행위에 대한 특수한 권리를 타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첫째, 동의는 의도적이고 (아마도 불필요하지만) 아는 채로 주어져야 하며, …… 둘째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동의의 두 조건을 제시한다. A. John Simmons (1976), p. 276 참조.

요청 사례에 적용해 보자. 일정한 정치 공동체 P의 구성원이 아닌 A가 그 공동체의 영역 내에 살고 있다. A는 P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를 표현한 적이 없고, 그런 동의를 요청 받은 적도 없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그는 P에 복종할 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으며, P에게 일정한 혜택을 요구할 상관적인 도덕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 A와 P 사이에는 일반적인 도덕적 관계만 성립할 뿐 특수한 도덕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A는 P의 영역 내에서 태어나 자력구제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살아왔을 뿐이다. 즉, P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왔다. 물론 P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으로부터 A를 배제할 수는 없다. 즉, A는 국방과 치안 등이 P로부터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그로 인해 P가 일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A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무임승차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A는 P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고, A가 받는 혜택은 시몬스의 개방된 혜택에 지나지 않으므로 P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P의 구성원인 B가 A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에 A는 P로부터의 경찰 보호를 요청하고, P는 이에 응하여 A에게 경찰의 특별 보호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시몬스가 의도한 것은 이런 사례에서 A가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을 요청하여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누릴 때에만 A와 P 사이의 특수한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동시에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주목해야 하는 것은 A가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것은 자발적 선택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A는 자력구제와 P의 보호라는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A는 P의 경찰 보호를 의도하고 그러한 보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 행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더불어 A는 P와의 특수한 도덕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 행위자 개인에 한정되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적인 선택 행위이다. 따라서 P의 경찰 보호라는 혜택의 수용은 동의 개념에 포섭된다. 이것은 앞의 동의에 대한 규정에 정확히 들어

맞음을 알 수 있다.

> 만일 행위자 A가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정치 공동체 P에 대해 일정한 혜택(경찰의 특별 보호)의 결과를 의도하고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조건과 결과를 인식하여 그 혜택을 수용하겠다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는 그 혜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경우 시몬스의 혜택의 수용 개념은 묵시적 동의 개념에 포섭된다.[51] 사실 시몬스가 개방된 혜택과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의 구별에 따라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를 구별한 것은 공정성 논변의 자발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혜택의 수용을 묵시적 동의에 포섭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시몬스의 강한 해석(초기 해석)을 따를 경우, 혜택의 수용은 묵시적 동의로 포섭된다.

한편 시몬스의 약한 해석(후기 해석)은 로크가 묵시적 동의가 약한 의미에서 선택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를 경우, 한 국가의 지배 영역을 향유하는 것이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향유가 '선택을 지시하는 반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혜택의 수용은 직접적으로 묵시적 동의에 포섭된다. 따라서 시몬스의 어떤 해석을 따르든, 혜택의 수용은 묵시적 동의로 포섭되는 것이다.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은 의도 조건과 인식 조건을 통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개방된 혜택과 쉽게 획득될 수 있는 혜택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응하여 단순한 수혜와 혜택의 수용을 구별했다. 이런 구별을 통해 시몬스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

51) 혜택의 수용 개념이 명시적 동의 개념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 개념에 포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함을 말이나 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정치 공동체가 제공하는 혜택의 수용을 통해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에 대한 귀속 여부에 대한 명시적 물음이 없는 경우, 혜택의 수용과 같은 '다른 종류'의 행위가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점은 혜택의 수용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공정성 논변이 동의 교설에 포섭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한 논점이 바로 이것이다. 혜택의 수용을 개념을 자발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해석할 경우 공정성 논변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고 동의 교설로 포섭된다는 것이다.

V. 결 론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시키는 논변들 중 거래 논변은 개인의 자발적 행위를 통해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논변들이다. 이 논변은 동의 이론과 상호 보답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성 논변으로 구별되었다. 하트와 롤즈에 의해 고안되고 발전된 공정성 논변은 혜택의 수용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바로 그 점이 공정성 논변의 매력이었다. 이에 따라 여러 이론가들은 공공재에 초점을 맞춘 혜택의 수용을 통해 공정성 논변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위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혜택의 수용이 충족시켜야 하는 두 조건, 의도 및 인식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혜택의 수용 개념은 묵시적 동의 개념에 포섭된다. 이것은 공정성 논변이 동의 논변으로 환원됨을 의미한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한 부분은 시몬스의 탁월한 분석이 마주치게 되는 바로 이 난점이다.[52)]

---

52) 본 논문의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시몬스가 “결국 공정성 입장을 동의 교설로 환원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왜 “난점”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한 바가 바로 시몬스의 논리를 따라 가면 공정성 논변이 동의 교설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몬스는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두 입장을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동의 교설은 정치적 의무의 발생에서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공정성 논변은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의 분석은 결국 공정성 논변을 동의 교설로 환원시키는 불행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정성 논변이 의도 및 인식 조건을 어떻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 나아가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의 현실적 확보에 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 권위와 의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이상으로, 즉, 비판적 준거의 제시 이상의 현실적 설명력을 지닌 이론을 원한다면, 해결해야 할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동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묵시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인지, 정치 공동체의 도덕성과 묵시적 동의 간에는 어떠한 지위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성 논변과 관련해서는, 시몬스가 제시하는 혜택의 수용을 위한 두 조건, 의도 및 인식 조건을 자발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혜택을 롤즈와 같은 일차적 선(primary goods)이나 클로스코와 같은 추정적 가치나 혜택으로 해석할 경우 이것이 가설적 동의로 다시금 환원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해석이 철학자의 단순한 선취적 판단은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겠다.

투 고 일: 2010. 02. 02.
심사완료일: 2010. 04. 20.
게재확정일: 2010. 05. 17.

이명순
서울대학교

게 명시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몬스의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Arneson, Richard,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s,” *Ethics*, 92권 (1982. 7월).

Bennett, John G., “A Note on Locke’s Theory of Tacit Consent,” *Philosophical Review*, 88권 (1979. 4월).

Brudney, Daniel, “Hypothetical Consent and Moral Force,” *Law and Philosophy*, 10권 (1990).

Hart, H. L. A.,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Philosophical Review*, 64권 (1955. 4월).

Klosko, George,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Ethics*, 97권 (1987. 1월).

_____, “Presumptive Benefit,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6권 (1987. 여름).

Locke, John,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Peter Laslett 편집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dent Edition, 1988). 『통치론』, 강정인, 문지영 역, 까치, 1996.

Mankie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Second Edition, 2001).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Pitkin, Hannah, “Obligation and Consent I,”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9권 (1965. 12월).

_____, “Obligation and Consent II,”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권 (1966. 3월).

Rawls, John, “Justice as Fairness (1958),”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편집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역, 서광사, 1988.

_____,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1964),"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편집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법적 의무와 공정한 경기의 의무」, 황경식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역, 서광사, 1988.

_____,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1999). 『정의론』, 황경식 역, 이학사, 2003.

Russell, Paul, "Locke on Express and Tacit Consent: Misinterpretation and Inconsistencies," *Political Theory*, 14권 (1986. 5월).

Simmons, A. John, "Tacit Consent and Political Oblig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5권 (1976. 봄).

_____, *On the Edge of Anarchy: Locke, Consent, and the Limits of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_____, "The Principle of Fair Play (1979),"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____,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the Justification of Conscription (1983),"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____, ""Denisons" and "Aliens": Locke's Problem of Political Consent (1988),"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____, "Philosophical Anarchism (1996),"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____, "Fair Play and Political Obligation: Twenty Years later,"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____,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Singer, Peter, *Practic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철학과 현실사, 1997.

Stark, Cynthia A., "Hypothetical Consent and Justific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97권 (2000. 6월).

ABSTRACT

A Critique of Simmons's Analysis of the Consent Doctrine and the Fair Play Arguments

Lee, Myung-Soon

There are two types of transactional arguments which justify individuals' obligation to obey political authorities: the consent doctrine and the fairness arguments. The former justifies it through individuals' giving express or tacit consent; the latter through reciprocating the benefits a political community offers. However, Simmons argues, for the former, that Locke confuses tacit consent with accepting benefits; for the latter, there are few who accept benefits and therefore, according to Simmons, both arguments do not apply to the legitimacy of political authority in contemporary political society.

However, I argue that Simmons faces a critical problem. If he distinguishes the acceptance of benefits from the mere receipt of benefits according to his intention and knowledge conditions, the former becomes a sort of choice act and further is subsumed within tacit consent as a relational choice act. Therefore, the fairness arguments maintaining that political obligation arises without individuals' consent lose their convincing force and hence are subsumed into the tacit doctrine.

Keywords: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Obligation, Justification, Legitimacy, Express Consent, Tacit Consent, Fairness, Acceptance Of Benefit, Mere Reception Of Benefit